



###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건축구분	신축	허가번호	2017-건축과-신축허가-52 (2017-4490325-1101-52)	
건축주	박미			
대지위치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38 - 1			
대지면적			1,782.0000	m <sup>2</sup>
건축물명칭	용곡동 239-2 업무시설 (박미순)	주용도	업무시설	
건축면적	1,021.7200	m <sup>2</sup>	건폐율	57.3400 %
연면적	4,434.5200	m <sup>2</sup>	용적률	248.8500 %
가설건축물 존치기간				

동고유번호	등명칭및번호	연면적(m <sup>2</sup> )	동고유번호	등명칭및번호	연면적(m <sup>2</sup> )
1	주건축물제1동	4,434.5200			

※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2017년05월26일

충청남도 천안시장

